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7 | 2026.1.26 (2026.1.19~2026.1.2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 · 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핵심자원 및 그 소재·부품의 생산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는 등의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추미애의원 등 16인)**」,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항목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법에 규정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 등 37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외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방위>**에서는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8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 11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3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3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 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17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 1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2인) 1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 18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 20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추미애의원 등 16인) ·····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2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3인) ·····23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24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2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2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25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6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6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26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2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2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30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31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 등 37인) ·····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모든 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
- **[중대재해]**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 의무화 -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수시공시·정기공시 규정 개정과 실무대응 포인트 -
- **[조세]**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자산과세 분야)
- **[조세]**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 분야)
- **[노동]** '근로자 추정제' 도입 및 기업의 대응방안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 7. - 2026. 1. 2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 - ①대·중소기업간 수주·수출 성과 공유, ②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추진전략 제시	2026-01-21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 · 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힘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하였음

[전략 1]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

(1) 대·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미국 이외의 국가로 동반진출하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현재 10억원).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은·산은·무보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한도·금리 등). EU 등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가 구축(~'28년)될 계획

(2)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7조원 규모로 공급.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3조원으로 확대(당초 1조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26.1월~)

(3) 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및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상생협력기금 규모가 향후 5년간('26~'30년) 1.5조원 이상으로 조성('26~'30년 연평균 3,000억원).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

[전략 2]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 강화

(1) 공동 기술개발·협업을 통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GPU('25년 추경 활용분 약 1만장)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 정부의 GPU 공급 사업(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사업이 연계 추진.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장비 배치 및 경영기법 등 지식·기술·노하우도 중소기업으로 확산

(2)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 이를 위해, 동반성장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

(3)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현재 25명)이 확충되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 반영 및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

[전략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 인공지능 기본법의 투명성 확보 의무의 세부 이행 방안 제시 - 현장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기준 구체화	2026-0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음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됨.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밝힘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여기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됨

반면,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와 생성물을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임

투명성 확보 의무는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제1항)와 ▲인공지능 생성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의 표시(제2항, 제3항)로 나뉨

사전 고지 의무(제1항)는 이용자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소프트웨어·앱 구동 화면에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서비스 형태에 따른 이행 방법을 제시하였음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제2항, 제3항)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이용되는 경우’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기술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인공지능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될 때는 사용자 이용 환경(UI)이나 상징(로고) 표출 등을 통해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챗봇 등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 전 안내나 화면 내 상징(로고) 표출을 인정하며, 게임·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는 로그인 시 안내나 캐릭터에 인공지능임을 표시하는 방식 등을 허용하였음

반면,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다 확실한 표시 적용이 요구됨.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내려받기·공유할 때는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가시·가청적 식별무늬<워터마크> 등) 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제공 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메타데이터 등)을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에 적용하도록 하였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6-01-22 시행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6-01-22 시행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절차 및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23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0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에는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수준 및 생육환경 제어시스템의 기술수준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및 기술 실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1-24 시행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조·수입신고 절차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그 제조자·수입자 및 판매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수입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 절차·기준 및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 기준·절차를 마련하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디지털의료기기 변경허가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정보 표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7-21 시행 예정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 등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9. ~2026.02.05.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부품의 생산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기한을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 소득의 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9. ~2026.02.0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당초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9. ~2026.02.05.

소액 탁송품·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를 판정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비율의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위법한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세운송 관세행정에 맞게 보세운송의 신고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재정경제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9. ~2026.02.05.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세환급 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9. ~2026.02.05.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의 계산·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법·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환기 적용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6, 팩스: 044-215-8065)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9. ~2026.02.05.

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및 비용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가액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의 범위를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인 경우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청년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공익사업 수용 등의 사유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신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농지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축소하며,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시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20. ~2026.03.03.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며, 비제조업 사업장이나 임차인도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21. ~2026.02.06.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3제3항)

-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5제5항)

-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③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안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 현행 법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기준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상 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전화: 044-202-7615, 팩스: 044-202-807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2026-01-21 발의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예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2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2026-01-22 발의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42조의3)**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2026-01-19 발의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2인)	2026-01-19 발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긴급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개정,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의8 신설, 제3조제2항 개정 및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2026-01-20 발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026-01-21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전문적 영역인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성상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의 보안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제9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2026-01-22 발의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안 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②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 국외 이전으로 보도록 함 (안 제28조의8 제1항)

③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 (안 제29조 각 호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6-01-22 발의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추미애의원 등 16인)	2026-01-19 발의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방산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6-01-20 발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아울러,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물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인 표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도 심의 및 차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026-01-21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2026-01-21 발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26-01-22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자살 방법이나 선정적·폭력적인 정보에 노출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이 생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2024년 2월과 작년 4월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나누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작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살이나 성적 이미지 관련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오픈AI, 메타 등 AI 챗봇 제작기업 7곳에 대해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안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2026-01-22 발의

최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기업 간의 보안 책임이 모호하여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외부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이나 클라우드 접근 권한 설정 오류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임

현행법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요건으로 작용할 뿐 민간 대형 클라우드 이용 기업이나 제공자에게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적인 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복잡성에 비해 내부 보안 감사나 접근 통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안인증을 의무화하여 민간 영역의 보안 수준을 공공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클라우드 전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2026-01-22 발의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도입과 외부 협력업체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정보보호지침은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복잡해진 IT 공급망 관리와 내부자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 업데이트나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즉시 회수되지 않아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등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격접속자나 수탁사업자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자의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항목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3항 및 제45조의3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3인)**	2026-01-23 발의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민간 보안 전문가(화이트해커 등)와 협력하여 사전에 취약점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가 확산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있어,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을 연구·발굴하는 보안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 또한 별도의 신고 채널이나 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아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되거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방침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정보보호연구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활동을 양성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8부터 제47조의10까지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2026-01-19 발의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2026-01-19 발의

과거 물품 수출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과 달리,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제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중소기업이 마주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근거는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단편적 지원수단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전략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요자 편의 확대 및 지원사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일원화된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정책의 범부처 총괄 기능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2026-01-19 발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함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실질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9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2026-01-20 발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업무·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9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026-01-2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6-01-22 발의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은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안보 위협 물품 등의 수출입통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쟁·사변·천재지변, 교역상대국의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권익 불인정, 교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2026-01-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01-20 발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2026-01-21 발의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026-01-21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6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6-01-22 발의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6-01-22 발의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6-01-22 발의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8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6-01-20 발의

현행법은 포장재, 가구·가전제품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재질·구조 기준 설정, 재활용의무 부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분류되는 제품 중에서도 물티슈와 같이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질·구조 개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6-01-20 발의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2026-01-20 발의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 등 37인)	2026-01-20 발의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6-01-23 발의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1/27(화) 14:00	-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등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소위	1/27(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1/28(수) 10:00	- 법안 의결, 법안 상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1/27(화) 14:00	-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6(월) 10:00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가)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최민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6(월) 1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정혜경·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26(월) 11: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연 “2026 경제 전망과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이인영 의원실	국회 본청 316호
	1/27(화) 14:00	**대한민국 대전환 :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손명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
	1/27(화) 14:00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신동욱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8(수) 09:30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	박홍배·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28(수) 11:50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브라운백 3차 포럼**	최형두·이주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29(목) 14:00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	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26(월)	**「Data+」 제2026-1호(통권 제25호) 발간**	국회도서관	
	1/28(수)	**「금주의 서평」 제2026-4호(통권 제763호) 발간**		
	1/30(목)	**「NABO Focus」 제13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1(수)	「금주의 서평」 제2026-3호(통권 제762호)	국회도서관	
	1/22(목)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호(통권 제25호)		
	1/22(목)	「NABO Focus」 제132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9(월)	금융	모든 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
1/20(화)	중대재해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 의무화 -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수시공시 · 정기공시 규정 개정과 실무대응 포인트 -
1/20(화)	조세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법인과세 분야)
1/21(수)	조세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산과세 분야)
1/22(목)	조세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 분야)
1/23(금)	노동	'근로자 추정제' 도입 및 기업의 대응방안
1/23(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 7. - 2026. 1. 20.)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